

행정처분의 기준(제22조제1항 관련)

1. 법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·제4호의2·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의 기준

가. 일반기준

- (1)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(2) (1)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[(1)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]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(3) 2 이상의 동일위반행위를 한 때(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동일위반행위를 포함한다)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, 이 경우 그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때에는 3월의 범위에서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.
- (4) 동일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 또는 동일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때(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위반행위를 포함한다)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,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3월의 범위에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 [동일위반행위에 대하여 (3)에 따라 가중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중처분기간을 말한다]의 3분의 2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,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을 수 없다.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각의 위반행위(2 이상 동일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회의 위반행위로 본다)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본다.
- (5) 동일위반행위로 4차의 행정처분까지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한 때는 해당위반행위에 대한 4차 위반시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월, 영업정지 2월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월로 처분한다.
- (6)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·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(가)부터 (라)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,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(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할 수 있으며,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- (가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(나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(다)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영화업자로서 모범적인 영업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(라)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
- (7)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, 그 처분이 등록취소(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인 경우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(6)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.
- (가)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
- (나)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·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
- (8) 영업정지처분기간 1월은 30일로 보며, (3)·(4)·(6) 및 (7)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.

나. 개별기준

위반사항	근거법령	행정처분기준			
		1차위반	2차위반	3차위반	4차위반
(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에 따른 등록을 한 때	법 제45조 제1항 제1호	등록취소			
(2) 법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	법 제45조 제1항 제2호	영업정지 1월	영업정지 3월	등록취소	
(가)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한 때					
(나)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12세 이상 관람가나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자를 입장시킨 때		시정명령	영업정지 10일	영업정지 20일	영업정지 1월
(다) 법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에		영업정지 10일	영업정지 1월	영업정지 3월	등록취소

대하여 청소년을 입장시킨 때					
(라) 법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에 대하여 청소년을 입장시킨 때		영업정지 1월	영업정지 3월	등록취소	
(마) 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분류받은 영화의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의 내용을 변경하여 영화를 상영한 때		시정명령	영업정지 1월	영업정지 3월	등록취소
(3)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상영관 밖에 게시하거나 제한상영관 밖으로 보이도록 한 때	법 제45조 제1항 제3호	시정명령	영업정지 1월	영업정지 3월	등록취소
(4)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한 때	법 제45조 제1항 제4호	시정명령	영업정지 1월	영업정지 3월	등록취소
(5)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	법 제45조 제1항 제4호의 2	시정명령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등록취소
(6) 1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	법 제45조 제1항 제7호	등록취소			
(7)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때	법 제45조 제1항 제8호	등록취소			

2.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준

- 가.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기준 미달일 수가 20일 이내인 경우: 미달일 수 1일당 영업정지 1일
- 나.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기준 미달일 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: 미달일 수 1일당 영업정지 2일

3.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준

- 가. 상영금지나 정지처분을 받은 후 상영일수가 10일 이내인 경우 : 상영일수 1일당 영업정지 1일
- 나. 상영금지나 정지처분을 받은 후 상영일수가 11일 이상 20일 이내인 경우 : 상영일수 1일당 영업정지 2일
- 다. 상영금지나 정지처분을 받은 후 상영일수가 21일 이상인 경우 : 상영일수 1일당 영업정지 3일. 다만, 영업정지기간이 3월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.